

서민증세 담뱃값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2
------	-----

2014. 9. 22.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4년 9월 15일
- 나. 제안자 : 신원철·김용석(도봉)의원(찬성자 29명)
- 다. 회부일자 : 2014년 9월 17일
- 라.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
경제위원회(2014년 9월 22일) 상정,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 요지

- 지난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
연 대책을 보고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
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

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이 발표에 의하면 2025년에는 담배 한 갑이 6천50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2조 8천억원의 세수확대가 예상되는 바, 이는 금연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이명박정부 5년 동안 감면된 82조 2천억원의 부자감세를 메우기 위한 서민증세 대책으로 판단됨.
- 실제 이명박정부는 부자와 기업을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5년 동안 무려 82조 2천억원의 세금을 감면하여 국가재정의 적자운영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파산으로 내몰았음. 국가세금 중 39.51%가 매년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데 이명박정권시절 부자감세로 1995년 62.5%였던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4년에는 50.1%로 급락했음.
- 이렇게 이명박정부 5년과 박근혜정부 2년동안 부자감세로 결손된 국가세수는 100조원이 넘고 지방교부세 재정도 40조원이나 줄어든 것을 국민건강을 가장한 담뱃값 인상이라는 서민증세로 메우려고 하고 있음.
- 정부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를 경우 소비량이 34% 줄것으로 예상하나 현재 담뱃값과 흡연률의 인과관계는 명백히 밝혀진

바 없고, 증세목적이 아니었다면 굳이 기준에 없던 세목을 신설할 필요성이 없는 바, 이는 “증세없는 복지”를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행태로 볼 수 있음.

- 이에 서민증세를 위한 담뭍값 인상안을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부자감세도 철회할 것을 제안함.

Ⅲ . 이 송 처

-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IV .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 본 건의안은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담뱃값 인상안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결국은 이명박 정부시절 감면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서민증세 대책으로 판단하여, 세수확보를 위한 담뱃값 인상안을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더불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부자감세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
- 이번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43.7%에 달하는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로 낮출 계획”이라고 담뱃값 인상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기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등에 더해 증가세¹⁾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음.
- 담뱃값이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되면 늘어나는 세수는 약2조 8,300억원 정도(현재 43% 성인남성 흡연률이 34%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계산)로 추정했고, 국세부과로 증가하는 세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1) 과세단위를 과세 객체인 금액에 두고 세율을 백분율로 표시한(증가율) 조세체계.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의 소매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증가세이다. 증가세는 경기의 변동 등으로 가격이 변동할 경우 세수입도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됨.

<담뱃값 인상시 세금 부담금 변화>

	현재 담배 1갑에(2500원)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금	변경 후 담배 1갑(4500원)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금
제조원가와 유통마진	950원	1182원
담배소비세	641원	1007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841원
지방교육세	321원	443원
부가가치세	234원	개별소비세(신설) 594
		433원
폐기물부담금	7원	

- 실제 2012년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서 2011년 세법개정으로 2008년에서 2012년동안 발생·추정한 누적 감세규모는 총 63조 8000억원으로 나타남.

< 이명박 정부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2008-2012년 누적기준) >

(단위:조원)

구분	'08년 개정	'09년 개정	'10년 개정	'11년 개정	합계	
세수효과	△88.7	22.2	1.3	1.4	△63.8	
세 목 별	소득세	△29.2	6.3	△0.3	△0.2	△23.4
	법인세	△33.8	12.0	0.6	1.4	△47.8
	부가가치세	△3.7	0.8			△4.5
	기타	△22.0	3.1	1.0	0.2	△26.3
귀 착 효 과	중소기업, 중산서민층	△36.2	3.6	0.5	△0.4	△32.5
	대기업, 고소득층	△52.1	18.6	0.7	1.8	△73.2
	기타	△0.4		0.1		△0.5

- 담뱃값과 흡연률 관련하여,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특히 청소년 흡연을 감소에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2011년 EU 담배규제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OECD 주요국 중 담배 한 갑의 가격이 1만 4975원으로 담뱃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인 아일랜드의 흡연률은 31.0%로 세계 6위에 해당되므로 담뱃값과 흡연률이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 결국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명분과 세수확보의 양면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 효과가 모호한 점과 서민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차제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열악한 구조(국세 8할, 지방세 2할)를 재편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민증세 담뱃값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02
----------	-----

발의년월일 : 2014년 9월 15일

발 의 자 : 신원철 김용석(도봉), 오경환 박진형,
김미경 김문수, 이순자, 맹진영, 서영진,
박기열 김인제, 김현아, 김진철 박준희,
이행자, 권미경, 문영민, 김창원, 김종욱,
박양숙, 이정훈, 장인홍, 우창윤, 이신혜,
강성언, 장우윤, 한명희, 김희걸, 오승록,
김영한, 문형주 의원 (31명)

1. 주 문

-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바,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때 단행한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서민증세로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소득재분배에 역행함으로 담뱃값 인상안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건의함.

2. 제안이유

- 지난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이 발표에 의하면 2025년에는 담배 한 갑이 6천50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2조 8천억원의 세수확대가 예상되는

바 이는 금연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이명박정부 5년동안 감면된 82조 2천억원의 부자감세를 메우기 위한 서민증세 대책으로 판단됨.

- 실제 이명박정부는 부자와 기업을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5년동안 무려 82조 2천억원의 세금을 감면하여 국가재정의 적자운영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파산으로 내몰았음. 국가세금 중 39.51%가 매년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데 이명박정권시절 부자감세로 1995년 62.5%였던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4년에는 44.8%로 급락했음.
- 이렇게 이명박정부 5년과 박근혜정부 2년동안 부자감세로 결손된 국가세수는 100조원이 넘고 지방교부세 재정도 40조원이나 줄어든 것을 국민건강을 가장한 담뱃값 인상이라는 서민증세로 메우려고 하고 있음.
- 정부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를 경우 소비량이 34% 줄것으로 예상하나 현재 담뱃값과 흡연률의 인과관계는 명백히 밝혀진 바 없고, 증세목적이 아니었다면 굳이 기준에 없던 개별소비세 세목을 신설할 필요성이 없는 바, 이는 “증세없는 복지”를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행태로 볼 수 있음.
- 이에 서민증세를 위한 담뱃값 인상안을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부자감세도 철회할 것을 요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 송 처

가.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서민증세 담뱃값 인상 철회 촉구 건의문

지난 9월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하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담배가격을 인상할 경우 2조 8천억원의 세수확대가 예상되고 1인당 세금추가 부담은 연70만원에 이르며 소비자물가상승은 0.62%예상된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부자와 기업을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명 “부자세”를 감면하여 5년동안 무려 82조 2천억원 국가세수를 결손시켜 국가재정의 적자운영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파산으로 이르게 한 현상황을 국민건강을 가장한 담뱃값 인상이라는 서민증세로 메우려고 하는 것이다. 국가세금 중 39.51%가 매년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데 이명박정권시절 부자감세로 1995년 62.5%였던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4년에는 44.8%로 급락하였다. 이렇게 이명박정부 5년과 박근혜정부 2년동안 부자감세로 결손된 국가세수는 100조원이 넘고 지방교부세 재정도 40조원이나 줄어든 것을 국민 건강이라는 명목하에 담뱃값을 인상하여 세수를 확충하려는 것으로 “증세없는 복지”를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을 스스로 깨는 행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8명은 복지위에 계류 중인 담뱃값 5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건강보다 국고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고, 지난 2006년에도 한나라당

복지위 의원들은 ‘국민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담배값 인상
에 반대한다’는 정책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는바 이번 인상안은 세수
확충목적이 명백하다. 특히 증세가 목적이 아니었다면 굳이 기준에
없던 개별소비세 세목을 신설할 필요가 없고, 건강증진부담금 지출
에 대한 계획 없이 가격만 올리면 된다는 것은 국민건강보다 오히려
세수에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담배값이 인상될 경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흡연율이 높은 우리
나라의 실정상 소득이 낮은 사람의 담배지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
고, 결국 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는 ‘소득역진성’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이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과 서민증세를 통하
여 서민부담을 증가시키고 소득재분배를 역행하여 서민의 부담만 높
일 뿐이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는 지난 7년 동안 부자감세를 통해 결손 된 세
수를 서민증세로 메우려는 담배값 인상안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건의하며, 더불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부자
감세도 철회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2014. 9.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